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다. 수석검사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범죄구성요건과 그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부의 어느 조항도 이 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준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 원칙을 결코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간적 관할권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2.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2. 제13조 가호 또는 다호의 경우, 다음 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나.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3.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수락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에 의하여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 그 수락국은 제9부에 따라 어떠한 지체나 예외도 없이 재판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수석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나. 1개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수석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또는

다. 수석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제14조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1. 당사국은 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가 범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재판소의 수석검사에게 그 사태를 회부할 수 있다.
2. 회부시에는 가능한 한 관련 정황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태를 회부한 국가가 입수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석검사

1. 수석검사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수석검사는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석검사는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수석검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할 수 있다.
3. 수석검사가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예심재판부에 제출한다. 피해자는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예심재판부에 서 진술할 수 있다.
4. 예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다만, 이 허가는 사건의 관할권과 재판적격성에 관한 재판소의 추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예심재판부의 수사허가 거부는 수석검사가 동일한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근거하여 추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 후 제공된 정보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수석검사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는 수석검사가 동일한 사태에 관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추가 정보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재판소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 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요청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개신될 수 있다.

제17조

재판적격성의 문제

1. 전문의 10번째 단락과 제1조를 고려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가.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 단,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었고, 그 국가가 당해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단, 그 결정이 진정으로 기소하려는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따른 결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해인이 제소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라.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이 없는 경우

2. 특정 사건에서의 의사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적용가능한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가. 제5조에 규정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절차가 취해졌거나, 진행중이거나 또는 국내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나.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게 절차의 부당한 자연이 있었던 경우

다. 절차가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진행중인 경우

3. 특정 사건에서의 능력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당해 국가가 그 국가의 사법제도의 전반적 또는 실질적 봉괴나 이용불능으로 인하여 피의자나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지 여부 또는 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18조

재판적격성에 관한 예비결정

1. 사태가 제13조 가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어 수석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였거나 수석검사가 제13조 다호와 제15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석검사는 모든 당사국과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당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국가에게 이를 통지한다. 수석검사는 그러한 국가에게 비밀리에 통지할 수 있으며 또한 수석검사가 어느 자를 보호하거나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느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국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국가는 제5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며 자국에 대한 통지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타의 자를 수사하고 있다거나 수사하였음을 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다. 예심재판부가 수석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석검사는 당해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인에 대한 그 국가의 수사를 존중한다.

3. 국가의 수사 존중에 따른 수석검사의 보류는 보류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그 국가의 수사를 수행할 지정한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에 근거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수석검사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4. 당해 국가 또는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신속하게 심리될 수 있다.
5. 수석검사가 제2항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경우, 수석검사는 당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수사 및 후속 기소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6. 예심재판부의 결정이 계류중이거나 또는 수석검사가 이 조에 따라 수사를 보류한 때에는 언제든지, 수석검사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유일한 기회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증거를 이후에는 입수할 수 없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허가를 예심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추가적인 중대한 사실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제19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소의 관할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1. 재판소는 자신에게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직권으로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7조에 규정된 근거에 기한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가. 피의자 또는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이 발부된 자
 - 나. 사건을 수사 또는 기소하고 있거나 또는 수사 또는 기소하였음을 근거로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
 - 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
3. 수석검사는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사태를 회부한 자도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1회 이상 또는 재판시작 이후의 이의제기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후에 행하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제17조제1항다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5. 제2항 나호와 다호에 규정된 국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사실의 확인 이전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 또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예심재

판부에 회부된다. 공소사실의 확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1심재판부에 회부된다.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제82조에 따라 상소심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7. 제2항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국가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수석검사는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사를 정지한다.

8.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수석검사는 재판소로부터 다음의 허가를 구할 수 있다.

가.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종류의 필요한 수사 조치의 수행

나. 증인으로부터의 진술이나 증언의 취득 또는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시작된 증거의 수집 또는 조사의 완료

다.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수석검사가 제58조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한 자의 도주 방지 조치

9. 이의제기는 그 전에 수석검사가 수행한 행위 또는 재판소가 발부한 명령이나 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재판소가 제1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더라도, 수석검사는 그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근거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한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 수석검사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수사를 유예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관련국이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보는 관련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비밀로 한다. 수석검사가 그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자신이 유예하였던 절차에 관하여 해당 국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일사부재리

1. 이 규정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재판 받지 아니한다.

2. 누구도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서 재판 받지 아니한다.

3.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상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자는 누구도, 그 다른 재판소에서의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받지 아니한다.

가.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당해인을 보호할 목적이었던 경우, 또는

나. 그밖에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적법절차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상황에 비추어 당해인을 처벌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

제21조

적용법규

1. 재판소는 다음을 적용한다.

- 가. 첫째, 이 규정, 범죄구성요건 및 절차및증거규칙
 - 나. 둘째, 적절한 경우 무력충돌에 관한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조약과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칙
 - 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절하다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포함하여 세계의 법체제의 국내법들로부터 재판소가 도출한 법의 일반원칙. 다만, 그러한 원칙은 이 규정, 국제법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 및 기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재판소는 재판소의 기준 결정 속에서 해석된 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른 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부합되어야 하며, 제7조 제3항에서 정의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민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출생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제22조

범죄법정주의

1. 누구도 문제된 행위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정의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유추에 의하여 확장되어서는 아니된다. 범죄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의는 수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이 조는 이 규정과는 별도로 어떠한 행위를 국제법상 범죄로 성격 짓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형벌법정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제24조

소급효 금지

1.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확정판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가.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나. 실제로 일어났거나 착수된 범죄의 실행을 명령·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다.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이나 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착수에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 관할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러한 활동 또는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2) 집단이 그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것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의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4.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

18세 미만 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은 그 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하여,

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하에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 하에 있는 군대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군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군대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항을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나. 가호에 기술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상급자는 자신의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 하에 있는 하급자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하급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하급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알았거나 또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경우

(2) 범죄가 상급자의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

(3)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제를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제29조

시효의 부적용²⁾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주관적 요건

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사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행한 경우에만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2. 이 조의 목적 상 다음의 경우는 고의를 가진 것이다.

가.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행위에 관여하려고 의도한 경우

나. 결과와 관련하여, 사람이 그 결과를 야기하려고 의도하거나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아는 경우

3. 이 조의 목적 상 “인식”은 어떠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하다” 및 “인식하고서”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31조

2)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형사시효제도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제도가 있는데, 이 조항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

형사책임 배제사유

1. 이 규정에서 정한 여타의 형사책임 배제사유에 덧붙여, 행위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을 겪고 있는 경우나,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법의 요건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독의 결과로서 자신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 위험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중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람이 급박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범죄의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이나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재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보호되는 재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군대가 수행하는 방어작전에 그자가 관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호에 따른 형사책임 배제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급박한 사망 또는 계속적이거나 급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에 의하여 야기되었고, 그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그는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위협은,

(1)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2) 그 사람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2.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형사책임 배제사유라도 그 사유가 제21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하여 도출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의 고려에 관한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제32조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1. 사실의 착오는 그것이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흡결시키는 경우에만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된다.

2. 특정 유형의 행위가 재판소의 관할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의 착오는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가 범죄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흡결시키는 경우나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배제사유가 될 수 있다.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 어떠한 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 가. 그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하에 있었고
 - 나. 그자가 명령이 위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 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2. 이 조의 목적 상,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위법이다.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34조 재판소의 기관

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 가. 소장단
- 나. 상소심부, 1심부 및 예심부
- 다. 검찰국
- 라. 사무국

제35조 재판관의 근무

1.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전임 구성원으로 선출되며, 그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때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장단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선출된 때로부터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을 기초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나머지 재판관들의 어느 정도를 전임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제40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재판관에 대한 재정적 조치는 제4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6조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재판소에는 18인의 재판관을 둔다.
2. 가. 재판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소장단은 증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사유를 적시하여 제1항에 명시된 재판관의 증원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안을 신속히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 나. 그러한 제안은 제112조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심의된다. 제안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점에 발효한다.

- 다. (1) 나호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추가되는 재판관의 선거는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다음 회기에서 실시된다.
- (2) 나호와 다호(1)에 따라 재판관의 증원을 위한 제안이 채택되고 발효한 경우, 소장단은 재판소의 업무량이 이를 정당화할 경우 그 후 언제든지 재판관의 감원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의 수는 제1항에 명시된 수 미만으로 감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안은 가호 및 나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안이 채택된 경우, 재판관의 수는 필요한 수에 도달될 때까지 재직중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3. 가. 재판관은 각 국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및 성실성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된다.
- 나.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1) 형법과 형사절차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자격으로서 형사소송에서의 필요한 관련 경력, 또는,
- (2)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재판소의 사법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 직위에서의 풍부한 경험
- 다. 재판관 선거 후보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 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가. 재판관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이 규정의 어떠한 당사국도 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 당해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
-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정한 절차
- 추천에는 후보자가 제3항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상세하게 명시하는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나. 각 당사국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피추천자는 자국민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 규정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 다.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경우 추천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러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당사국총회가 정한다.
5. 선거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후보자명부를 둔다.
- 제3항 나호(1)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A명부
- 제3항 나호(2)에 명기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B명부
- 두 개 명부 모두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는 등재될 명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의 재판관 선거시 A명부로부터는 최소한 9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B명부로부터는 최소한 5인의 재판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 후의 선거는 양 명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상응하는 비율을 유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6. 가. 재판관은 제112조에 따라 재판관 선거를 위하여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7항을 조건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자는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최다득표를 한 18인의 후보자로 한다.
- 나. 제1차 투표에서 충분한 수의 재판관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충원될 때까지 가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속 투표를 실시한다.

7. 어떠한 2인의 재판관도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 구성의 목적 상 2개 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8. 가. 당사국들은 재판관의 선출에 있어서 재판소 구성원 내에서 다음 필요를 고려 하여야 한다.

- (1)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
- (2) 형평성 있는 지리적 대표, 그리고
- (3) 여성 및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

나. 당사국들은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시킬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9. 가. 재판관은 나호를 조건으로 9년간 재직하며, 다호 및 제37조 제2항을 조건으로 재선 될 수 없다.

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3분의 1은 추첨으로 3년의 임기동안 근무 하도록 선정되며, 또 다른 3분의 1의 재판관은 추첨으로 6년의 임기동안 근무 하도록 선정되며, 나머지 재판관은 9년의 임기동안 근무한다.

다. 나호에 따라 3년의 임기동안 근무하도록 선정된 재판관은 완전한 임기로 재 선될 수 있다.

10.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1심부 또는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1심 또는 상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재직한다.

제37조

재판관의 결원

1.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결원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2.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의 임기동안 재직하며, 그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완전한 임기로 재선될 수 있다.

제38조

소장단

1.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들은 각각 3년의 임기 또는 그들 각자의 재판관 임기의 종료 중 먼저 만료되는 때까지 재직한다. 그들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2. 제1부소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제2부소장은 재판소장과 제1부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 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재판소장은 제1부소장 및 제2부소장과 함께 소장단을 구성하며, 소장단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가. 검찰국을 제외한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 그리고
 - 나. 이 규정에 따라 소장단에 부여된 다른 기능
4. 제3항 가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장단은 상호 관심사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석검사와 조정하고 동의를 구한다.

제39조

재판부

1. 재판관 선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는 제34조 나호에 명시된 담당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상소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다른 재판관으로, 1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예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담당부 배정은 각 부가 수행할 기능의 성격과 선출된 재판관의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각 부에 형법 및 형사절차와 국제법에서의 전문지식이 적절히 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심부와 예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을 위주로 구성된다.
2. 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각 부의 재판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 나. (1)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심부의 모든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 (2)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3) 예심재판부의 기능은 예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 규칙에 따라 예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다. 이 항은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복수의 1심재판부 또는 예심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가. 1심부와 예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부에서 3년 간 근무하며, 그 후에도 해당부에 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근무한다.
 - 나.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들의 전체 임기동안 그 부에서 근무한다.
4.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오직 그 부에서만 근무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장단이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부에서 예심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배속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예심재판 단계에 참여하였던 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1.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2. 재판관은 자신의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재판관은 다른 본업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문제가 재판관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재판관은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재판관의 회피와 제척

1. 소장단은 재판관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당해 재판관이 이 규정상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2. 가. 재판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재판관이 전에 어떤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관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재판관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도 제척된다.
- 나. 수석검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이 항에 따라 재판관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재판관의 제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의가 제기된 재판관은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검찰국

1. 검찰국은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검찰국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관할범죄와 그 범죄의 입증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며,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검찰국의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찰국의 장은 수석검사로 한다. 수석검사는 직원, 시설 및 다른 자원을 포함하여 검찰국의 관리 및 행정에 전권을 가진다. 수석검사는 이 규정에 따라 수석검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1인 이상의 차석검사의 조력을 받는다.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3.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높은 도덕성과 형사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있어 고도의 능력과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들은 재판소의 실무언어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수석검사는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결로 선출된다. 차석검사는 수석검사가 제시한 후보자 명부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수석검사는 충원될 차석검사의 직에 대하여 각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선출시 더 짧은 임기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9년의 임기동안 재직하며 재선될 수 없다.
5.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자신의 소추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본업적 성격의 직업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소장단은 수석검사 또는 차석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

7.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에도 참여하지 아니한다. 특히 그들이 전에 어떠한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그들은 이 항에 따라 그 사건으로부터 제척된다.
8. 수석검사와 차석검사의 제척에 관한 모든 문제는 상소심재판부가 결정한다.
 - 가.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는 언제든지 이 조에 규정된 사유에 근거하여 수석검사와 차석검사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수석검사와 차석검사는 적절한 경우 이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9. 수석검사는 성폭력 또는 성별 폭력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관을 임명한다.

제43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제42조에 따른 수석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해함이 없이 재판소의 행정과 사무의 비사업적 측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은 재판소의 수석행정관인 사무총장이 이끈다. 사무총장은 재판소장의 권위 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재판소의 실무 언어 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4. 재판관들은 당사국총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결로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의 추천에 따라, 재판관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5. 사무총장은 5년 임기동안 재직하며 한번 재선될 수 있고, 전임으로 근무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5년 또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로 결정하는 더 짧은 기간으로 하며, 사무차장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선출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내에 피해자 및 증인 담당부를 둔다. 이 담당부는 검찰국과 협의하여 증인, 재판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행한 증언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부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다.

제44조

직원

1. 수석검사와 사무총장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을 임명한다. 수석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임명을 포함한다.
2.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수석검사와 사무총장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6조제8항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3. 사무총장은 소장단 및 수석검사의 합의를 얻어 재판소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에 관한 조건들을 포함하는 직원규칙을 제안한다. 직원규칙은 당사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판소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의 각 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국,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가 제공하는 무보수 요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수석검사는 검찰국을 대표하여 그러한 제공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한 무보수 요원은 당사국총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다.

제45조

선서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맡기 전에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각자 엄숙히 선서한다.

제46조

직의 상실

1.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을 상실한다.
 -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 나.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판관, 수석검사 또는 차석검사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당사국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가. 재판관의 경우, 다른 재판관들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에 대하여 당사국들의 3분의 2의 다수결
 - 나. 수석검사의 경우, 당사국들의 절대다수결
 - 다. 차석검사의 경우, 수석검사의 권고에 따른 당사국들의 절대다수결
3.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은 자신의 행동 또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거나 접수하고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그외에는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징계처분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것보다 덜 중대한 성격의 부정행위를 범한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48조

특권과 면제

1.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판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및 사무총장은 재판소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교사절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들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계속 면제를 부여받는다.
3. 사무차장, 검찰국의 직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 · 면제와 편의를 향유한다.
4. 변호인, 전문가, 증인 또는 재판소에 출석이 요구되는 다른 자는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재판소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5. 가. 재판관 또는 수석검사의 특권과 면제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나. 사무총장의 특권과 면제는 소장단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 차석검사와 검찰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수석검사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라. 사무차장과 사무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제49조

급여 · 수당 및 비용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는 급여 · 수당 및 비용을 받는다. 이러한 급여와 수당은 그들의 재직기간 동안 산감되지 아니한다.

제50조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

1. 재판소의 공식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재판소의 판결과 재판소에 제기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타 결정은 공식언어로 공표된다. 소장단은 절차및증거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항의 목적 상 어떠한 결정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지를 결정한다.
2. 재판소의 실무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다. 절차및증거규칙은 다른 공식언어가 실무언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3. 절차의 당사자 또는 절차에 참가가 허용된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소는 당사자나 국가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단, 재판소는 그러한 허가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제51조

절차및증거규칙

1. 절차및증거규칙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2.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 가. 당사국
 -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다. 수석검사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채택으로 발효한다.

3. 절차및증거규칙의 채택 후, 그 규칙에 재판소에 제기된 특정한 사태를 다룰 규정이 없는 긴급한 경우, 재판관들은 당사국총회의 차기 정기회기 또는 특별회기에서 채택·개정 또는 거부될 때까지 적용될 임시규칙을 3분의 2의 다수결로 제정할 수 있다.
4. 절차및증거규칙, 그 개정 및 모든 임시규칙은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시규칙뿐만 아니라 절차및증거규칙의 개정은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이 충돌할 경우, 이 규정이 우선한다.

제52조

재판소 규칙

1.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재판관들은 재판소의 일상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판소 규칙들을 절대다수결로 채택한다.
2. 재판소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수석검사 및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3.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재판관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시에 발효한다.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채택 즉시 당사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사국에게 회람된다.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과반수로부터 반대가 없는 한, 재판소 규칙이나 그 개정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부 수사 및 기소

제53조

수사의 개시

1. 수석검사는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한 후,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석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 가. 수석검사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재판소 관할범죄가 범하여졌거나 범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 그리고
 - 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수석검사가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오직 나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수석검사는 이를 예심재판부에 통지한다.
2. 수사 후 수석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 및 제14조에 따라 회부한 국가 또는 제13조 나호에 따른 사건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자신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한다.

- 가. 제58조에 따른 영장 또는 소환장을 청구할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나. 사건이 제17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없는 경우, 또는
 - 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이익, 피의자의 연령 또는 죄악 정도 및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의 역할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기소가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 제14조에 따른 사건 회부국 또는 제13조 나호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 요청이 있으면, 예심 재판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석검사의 절차종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수석검사에게 그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또한 수석검사의 절차종결 결정이 오직 제1항 다호 또는 제2항 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예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수석검사의 결정은 예심재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4. 수석검사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의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든지 재고할 수 있다.

제54조

수사에 관한 수석검사의 의무 및 권한

1. 수석검사는,
 - 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유죄 및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한다.
 - 나. 재판소 관할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을 포함하여 피해자 및 증인의 이익과 개인적인 상황을 존중하고, 특히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한다.
 - 다. 이 규정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한다.
2. 수석검사는 국가의 영역에서 다음의 경우 수사를 행할 수 있다.
 - 가. 제9부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 나. 제57조 제3항 라호에 따라 예심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수석검사는,
 - 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 나. 수사증인 자, 피해자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들을 신문할 수 있다.
 - 다.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나 조직의 협조를 그들 각각의 권한 그리고/또는 임무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라.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개인의 협조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약정 또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약정 또는 협정은 이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마. 수석검사가 비밀을 조건으로 그리고 오로지 새로운 증거를 산출할 목적으로 취득한 문서 또는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 바. 정보의 비밀, 개인의 보호 또는 증거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수사중 개인의 권리

1. 이 규정에 따른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은,
 - 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시인하거나 자백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어떠한 형태의 강요, 강박 또는 위협, 고문,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 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 이외의 언어로 신문 받는 경우, 무료로 유능한 통역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번역의 도움을 받는다.
 - 라.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자가 수석검사 또는 이 규정 제9부에 의한 요청에 따라 국가 당국의 신문을 받게 될 경우, 그는 신문에 앞서 자신에게 고지되어야 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신문에 앞서 그가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
 - 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됨이 없이 침묵할 권리
 - 다. 자신이 선택하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자신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지정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 라.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석 하에 신문을 받을 권리

제56조

증언 등 확보를 위한 특별조사³⁾에 관한 예심재판부의 역할

1. 가. 수석검사가 수사가 증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얻거나 증거를 조사·수집 또는 검사하기 위한 특별조사 기회를 제공하며 재판을 위하여 추후에는 그런 기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석검사는 이를 예심재판부에 통지한다.
나. 이 경우 예심재판부는 수석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절차의 효율성과 일체성을 보장하고, 특히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예심재판부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수석검사는 가호에 규정된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에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제1항 나호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후속 절차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

3) <편집자 주> 원문에는 'a unique investigative opportunity'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하여 '증언 등 확보를 위한 특별조사'라고 의역하였다. 이는 한국법상 일종의 증거보전절차를 의미한다.

- 나. 절차에 대한 기록의 작성 지시
 - 다. 보조할 전문가의 임명
 - 라.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재판소에 출석한 자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허가 또는 그러한 체포나 출석이 아직 없었거나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참석하여 피의자측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인의 임명
 - 마. 증거의 수집 및 보전과 신문을 감독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도록 예심재판부의 구성원 중의 한 명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부 또는 1심부의 활용가능한 다른 재판관의 지명
 - 바.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조치들
3. 가. 수석검사가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예심재판부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재판부는 수석검사가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석검사와 협의한다. 협의 후 수석검사가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 이 항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직권 조치 결정에 대하여 수석검사는 상소할 수 있다. 이 상소는 신속하게 심리된다.
4. 이 조에 따라 재판을 위하여 보전되거나 수집된 증거 또는 그에 대한 기록의 증거능력은 재판시 제69조에 의해 결정되며, 1심재판부가 정하는 증명력이 부여된다.

제57조

예심재판부의 기능 및 권한

1.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예심재판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행사한다.
2. 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7항 및 제72조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명령 또는 결정에는 그 재판부 재판관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나. 절차및증거규칙에 또는 예심재판부의 과반수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예심재판부의 단독 재판관이 이 규정에 따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따른 다른 기능 외에도, 예심재판부는
 - 가. 수석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나. 체포된 자 또는 제58조에 따른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6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어준비를 하는 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제9부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그들의 사생활 보호, 증거 보전,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보정보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 라. 가능한대로 언제나 당해국의 의견을 고려하되, 당해국이 제9부에 따른 협력 요청을 집행할 권한있는 사법당국이나 그 구성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협력 요청을 집행할 수 없음이 그 사건의 경우에 명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석검사으로 하여금 제9부에 따른 당해국의 협력을 확보함이 없이 그 국가의 영역안에서 특정한 수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 마.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서 정한 바

와 같이 증거가치 및 당해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피해자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 몰수 목적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93조 제1항 카호에 따라 당해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8조

예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1. 예심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언제라도 수석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석검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거 또는 기타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이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 가. 당해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 나. 당해인의 체포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것.
 - (1)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 (2) 수사 또는 재판소 절차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경우, 또는
 - (3) 적용 가능한 경우, 당해 범행의 계속 또는 그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판소의 관할권내에 속하는 관련범행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2. 수석검사의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신원 관련 정보,
 - 나. 당해인이 범하였다고 주장되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 라. 당해인이 그러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형성하는 증거 및 기타 정보의 요약, 그리고
 - 마. 수석검사가 당해인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
3. 체포영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신원 관련 정보,
 - 나. 당해인의 체포사유가 되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그리고
 - 다.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4.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5. 체포영장을 근거로 재판소는 제9부에 따라 당해인의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6.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명시된 범죄를 수정하거나 그에 추가함으로써 체포영장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심재판부는 당해인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그와 같이 수정한다.
7.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대안으로 수석검사는 당해인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예심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예심재판부는 당해인이 주장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소환장이 그의 출석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구금 이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않으면서 당해인이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소환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당해인의 성명 및 기타 신원 관련 정보,
 - 나. 당해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구체적 일자,
 - 다. 당해인이 범한 것으로 주장되는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 그리고
 - 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 소환장은 당해인에게 송달된다.

제59조

신병보유국에서의 체포절차

1.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체포된 자는 신속히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인치되어야 하며, 그 사법당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결정한다.
 - 가. 영장이 당해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 나. 당해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 다. 당해인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여부.
3. 체포된 자는 인도될 때까지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결정함에 있어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주장되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시석방을 정당화하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및 신병보유국이 그를 재판 소에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안전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포영장이 제58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적절하게 발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
5. 예심재판부는 여하한 임시석방 신청도 통지받아야 하며,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권고를 하여야 한다. 신병보유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해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 위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6. 당해인에 대한 임시석방이 허가된 경우, 예심재판부는 임시석방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7. 신병보유국의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당해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60조

재판소에서의 최초 절차

1. 당해인이 재판소로 인도된 후 또는 그가 자발적이거나 소환에 따라 재판소에 출석한 후, 즉시 예심재판부는 그 자가 범죄혐의 사실과 재판계속 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 등 이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체포영장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재판계속 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심재판부가 제58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됨을 확인한 경우, 그는 계속 구금된다. 그와 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심재판부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그를 석방한다.
3. 예심재판부는 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결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석검사 또는 당해인의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 재검토에 따라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심재판부는 구금, 석방 또는 석방 조건에 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예심재판부는 누구도 수석검사의 변명할 수 없는 지체로 인하여 재판 전에 불합리하게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재판소는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당해인의 석방을 고려한다.
5. 필요한 경우 예심재판부는 석방된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

1.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인의 인도 또는 자발적인 재판소 출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예심재판부는 수석검사가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 심리는 수석검사와 피의자 및 그의 변호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심재판부는 다음의 경우 수석검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석검사가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할 수 있다.

 가. 당해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나. 당해인이 도주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고, 그의 재판소 출석을 확보하고 그에게 공소사실 및 그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의 개시를 통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경우, 예심재판부가 정의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결정할 시에는, 변호인이 당해인을 대리한다.

3. 심리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해인은,

 가. 수석검사가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문서의 사본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나. 수석검사가 심리에서 근거로 삼고자 하는 증거를 통지받는다.

예심재판부는 심리 목적으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심리 전에 수석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당해인은 심리 전에 공소사실의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받아야 한다. 공소사실 철회의 경우,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에 철회의 사유를 통지한다.

5. 심리시 수석검사는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로써 각 공소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수석검사는 서면 증거 또는 약식 증거에 의존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소환할 필요는 없다.

6. 심리시 당해인은,

 가.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나. 수석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7. 예심재판부는 심리를 근거로 당해인이 기소대상인 각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근거하여 예심재판부는,

- 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관련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당해인을 1심재판부에 회부한다.
- 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을 거절한다.
- 다. 심리를 연기하고 수석검사에게 다음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 (1) 특정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또는 추가 수사를 행할 것, 또는
(2) 제출된 증거가 재판소의 다른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할 것
8. 예심재판부가 공소사실의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추가 증거가 보강되면 수석검사가 추후 다시 확인을 요청함에는 지장이 없다.
9. 공소사실이 확인된 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석검사는 예심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또한 피고인에게 통지한 후 공소사실을 수정할 수 있다. 수석검사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하거나 보다 중한 공소사실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가 열려야 한다. 재판이 시작된 후 수석검사는 1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10. 예심재판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이나 수석검사가 철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에 발부된 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11. 이 조에 따라 공소사실이 확인되면 소장단은 1심재판부를 구성한다. 동 재판부는 제9항 및 제64조제4항을 조건으로 그 후의 절차에 책임을 지며, 그 절차와 관련되는 적용 가능한 예심재판부의 모든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6부 공판

제62조

공판 장소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공판 장소는 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3조

피고인 출석하의 공판

- 피고인은 공판하는 동안 출석하여야 한다.
- 재판소에 출석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판을 방해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그를 퇴정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재판장 밖에서 재판을 관찰하고 변호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후,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 엄격히 필요한 기간 동안만 취해져야 한다.

제64조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

- 이 조에 규정된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은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2. 1심재판부는 공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에 적절히 유의하여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공판을 위해 사건이 배당되면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배정된 1심재판부는 다음을 행한다.
 - 가.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채택 한다.
 - 나. 공판에서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 다. 이 규정의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적절한 공판준비가 가능하도록 공판이 시작되기에 충분히 앞서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 또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다.
4. 1심재판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문제를 예심재판부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예심부의 다른 재판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후 1심재판부는 2인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적절한 대로 병합 또는 분리를 지시할 수 있다.
6. 공판 전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1심재판부는 필요한 대로 다음을 행할 수 있다.
 - 가. 제61조제11항에 규정된 예심재판부의 기능 행사,
 - 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그리고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공 요구,
 - 다. 비밀 정보의 보호 제공,
 - 라. 공판 전에 이미 수집되었거나 공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의 추가 증거의 제출 명령,
 - 마. 피고인,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 조치, 그리고
 - 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7. 공판은 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제68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증거로 제출될 비밀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 가. 공판이 시작되면 1심재판부는 예심재판부가 전에 확인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낭독한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65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한다.
 - 나. 공판에서 재판장은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절차의 진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지시를 조건으로, 당사자는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9. 1심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히 다음 권한을 가진다.
 - 가. 증거능력 또는 증거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권한, 그리고,
 - 나. 심리 중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10. 1심재판부는 절차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공판기록이 작성되고 사무총장이 이를 유지·보존할 것을 보장한다.

제65조

유죄인정에 관한 절차

1. 피고인이 제64조 제8항 가호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가. 피고인이 유죄인정의 성격 및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나. 피고측 변호인과의 충분한 협의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 다. 유죄의 인정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다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
 - (1) 수석검사가 제기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 (2) 수석검사가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보충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자료, 그리고
 - (3) 증인의 증언 등 수석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기타 증거.
2. 1심재판부가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함께 유죄인정에 관계된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사실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3. 1심재판부가 제1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죄인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재판부는 재판이 이 규정에 정한 일반 재판절차에 따라 계속되도록 명령한다. 또한 사건을 다른 1심재판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4. 정의의 이익,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가 보다 완벽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 가. 수석검사에게 증인의 증언을 포함한 추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 나. 재판이 이 규정에 정한 일반 재판절차에 따라 계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건을 다른 1심재판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5. 공소사실의 변경, 유죄의 인정 또는 부과될 형량에 관한 수석검사와 피고인측 사이의 어떠한 협의도 재판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무죄의 추정

1. 모든 사람은 적용법규에 따라 재판소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석검사에게 있다.
3. 피고인을 유죄판결하기 위하여는, 재판소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여야 한다.

제67조

피고인의 권리

1. 공소사실의 확인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규정의 조항에 따른 공개 심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공정한 심리 그리고 완전히 평등하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가. 공소사실의 성격,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받는다.
 - 나. 방어 준비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며, 피고인이 선택한 변호인과 비공개로 자

유로이 통신한다.

다.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는다.

라. 제63조제2항을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스스로 또는 자신이 선택하는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하며, 피고인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재판소가 지정한 법적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것을 통지받고 이러한 조력을 제공받는다.

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의 출석 및 신문을 확보한다. 피고인은 또한 항변을 제기하고 이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바. 재판소의 절차나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가 피고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능한 통역자의 조력과 공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번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사. 증언하거나 또는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유죄 또는 무죄의 결정에 고려됨이 없이 침묵할 수 있다.

아.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선서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다. 그리고,

자.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반증 책임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에 정한 다른 공개에 추가하여, 수석검사는 자신이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증거로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보여주거나 보일 수 있다고 믿는 증거, 피고인의 죄를 감경시킬 수 있는 증거, 또는 수석검사측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신속히 피고인측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68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절차 참여

1. 재판소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 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 및 범죄의 성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범죄의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특히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유의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석검사는 특히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동안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들은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제67조에 규정된 공개 심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의 일정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특수한 수단에 의한 증거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재판소가 모든 상황 특히 피해자나 증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아동이 피해자나 증인인 경우에 실행된다.

3.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 경우,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견해와 관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견해와 관심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4. 피해자 및 증인 담당부는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보호조치, 안전조치, 상담 및 지원에 관하여 수석검사 및 재판소에 조언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따른 증거 또는 정보의 공개가 증인이나 그 가족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수석검사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그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요약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와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6. 국가는 자국의 공무원 또는 고용인의 보호와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증거

1. 증언하기 전 각 증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자신이 제공할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한다.
2. 공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제68조 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열거된 조치에 정하여진 범위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이 규정을 조건으로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비디오 또는 오디오 기술에 의한 증인의 구두 또는 녹음 증언 및 문서나 녹취록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3. 당사자는 제64조에 따라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소는 진실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특히 증거의 증명력 및 그 증거가 공정한 재판이나 증인의 증언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고려하여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비밀에 관한 특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6. 재판소는 공지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실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 있다.
7. 이 규정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위반하여 취득된 증거는 다음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 가. 그 위반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야기시키는 경우, 또는
 - 나. 그 증거의 인정이 절차의 본질에 반하거나 또는 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8. 국가가 수집한 증거의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재판소는 그 국가의 국내법의 적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1. 재판소는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다음 범죄들이 고의적으로 범하여진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가. 제69조제1항에 따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허위 증언함.
 - 나.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아는 증거를 제출함.

- 다. 증인에게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조사하거나 증거 수집을 방해함.
- 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설득할 목적으로, 재판소의 직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영향을 미침.
- 마. 재판소의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수행한 임무를 이유로 재판소의 직원에 대해 보복함.
- 바.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령함.
2. 이 조의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다. 이 조에 따른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조건에 관하여는 피요청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3. 유죄판결의 경우, 재판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가.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자국민에 의하여 범하여진 경우, 자국의 수사 또는 사법절차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을 동 범죄행위에 확장·적용한다.
- 나. 당사국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사건을 소추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건을 성실하게 취급하며, 그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한다.

제71조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재판소는 재판소에 출석한 자가 절차를 방해하거나 재판소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퇴정, 벌금, 절차및증거규칙이 규정하는 기타 유사조치 등 구금 이외의 행정조치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치의 부과에 관한 절차는 절차및증거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72조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1. 이 조는 국가의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가 당해국의 판단으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6항, 제87조제6항 및 제9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의 기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건 위와 같은 공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이 조는 또한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자가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 사항을 당해 국가로 회부하고, 당해 국가도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임을 확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54조 제3항 마호 및 바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밀유지의 요건이나 제73조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국가가 자국의 정보 또는 문서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공개되고 있거나 공개될 것 같다는 사실

을 알고 그 공개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이 조에 따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

5. 어느 국가가 정보의 공개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국가는 협조적 수단에 의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가 위하여 경우에 따라 수석검사, 피고인측 또는 예심재판부나 1심재판부와 협력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요청의 변경 또는 명료화,
 - 나. 요청된 정보 또는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증거가 관련성이 있더라도 피요청국 이외의 출처로부터 취득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 다. 다른 출처로부터 또는 다른 형태에 의한 정보 또는 증거의 취득, 또는
 - 라. 요약 또는 편집본의 제공, 공개의 제한, 비공개 또는 일방적 참가 절차의 활용 또는 이 규정 및 절차 및 증거규칙상 허용되는 기타의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조력이 제공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합의.
6. 협조적 수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국가가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조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체가 필연적으로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석검사 또는 재판소에 자국의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통지한다.
7. 그 후 재판소는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데 관련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가 제9부의 협조요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요청되었으며, 당해 국가가 제93조제4항에 규정된 거절사유를 원용한 경우,

- (1) 재판소는 제7항 가호(2)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기 전 그 국가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경우 비공개 및 일방적 참가방식의 심리를 포함할 수 있다.
- (2) 피요청국이 당해 사건의 상황에서 제93조제4항의 거절사유를 원용함으로써 이 규정 상의 의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 제87조 제7항에 따라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 (3) 재판소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는,

나. 기타의 모든 경우,

- (1)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또는,
- (2) 공개를 명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로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다.

제73조

제3자의 정보 또는 문서

국가, 정부간 기구 또는 국제기구가 당사국에게 비밀리에 제공하여 당사국이 보관·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재판소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문서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원제공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원제공자가 당사국인 경우, 그 국가는 정보 또는 문서의 공개에 동의하거나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판소와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원제공자가 당사국이 아니고 공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원제공자에 대한 기존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문서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제74조

판결의 요건

- 1심재판부의 모든 재판관은 공판의 각 단계 및 평의의 전 과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소장단은 1심재판부의 구성원이 계속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건별로 공판의 각 단계에 참석하여 그를 대체하도록 가능한 대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교체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심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전체 절차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판결은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과 정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소는 공판에서 재판소에 제출되어 검토된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할 수 있다.
- 재판관들은 판결에 있어서 전원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되,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판결은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다.
- 1심재판부의 평의는 비밀로 유지된다.
-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1심재판부의 증거에 대한 판단과 결론에 관한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서술을 포함한다. 1심재판부는 하나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1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포함한다. 판결 또는 그 요지는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제75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소는 그 판결에서 피해자에 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재판소가 근거로 삼은 원칙을 명시한다.
- 재판소는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직접 내릴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재판소는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으로부터의 또는 이들을 대리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참작한다.
-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후에, 이 조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결정을 제109조의 규정이 이 조에 적용되는 것처럼 집행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6조 형의 선고

1. 유죄판결의 경우, 1심재판부는 부과할 적절한 형을 검토하며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및 개진된 의견 중 양형과 관련된 것을 참작한다.
2. 제65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재판부는 공판이 종결되기 전, 양형과 관련된 추가 증거 또는 의견을 심리하기 위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석검사 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실시한다.
3.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75조에 따른 어떠한 의견제시도 제2항에 규정된 추가 심리 중에 개진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심리 중에 개진된다.
4. 형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선고한다.

제7부 형벌

제77조 적용 가능한 형벌

1.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종신형
2. 징역에 추가하여 재판소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
 - 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벌금
 - 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당해 범죄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 · 재산 및 자산의 몫수

제78조 형의 결정

1. 형을 결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2. 징역형을 부과함에 있어, 재판소는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전에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재판소는 그 당해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기간도 공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자가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과 총 징역기간을 명시하는 합산형을 선고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개별형 중 가장 중한 형보다 짧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30년의 징역 또는 제77조제1항나호에 따른 종신형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

신탁기금

1. 재판소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을 설립 한다.
2. 재판소는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제80조

국가의 형별 적용과 국내법에 대한 불침해

이 부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가 자국법에 규정된 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 부에 규정된 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의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부 상소 및 재심

제81조

유·무죄 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상소

1. 제74조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 가. 수석검사는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 (1) 절차상의 하자,
 - (2) 사실의 오인, 또는
 - (3) 법령의 위반.
 -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를 대신한 수석검사는 다음 이유를 근거로 상소할 수 있다.
 - (1) 절차상의 하자,
 - (2) 사실의 오인,
 - (3) 법령 위반, 또는
 - (4) 절차 또는 판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근거.
2. 가. 수석검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와 형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양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나.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재판소가 유죄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수석검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제8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8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 다. 재판소가 유죄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에서 제2항 가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3. 가. 1심재판부가 달리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소심 계류 중 계속 구금된다.
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기간이 부과된 징역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자는 수석검사 역시 상소하여 아래 다호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방된다.
다. 무죄의 경우 피고인은 다음을 조건으로 즉시 석방된다.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주의 위험,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 및 상소심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1심재판부는 수석검사의 요청에 따라 상소심 계류중 그자의 구금을 유지할 수 있다.
(2) 다호(1)에 따른 1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4. 제3항 가호 및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판결 또는 형의 집행은 상소를 위하여 허용된 기간 및 상소절차 동안 정지된다.

제82조

기타 결정에 대한 상소

1. 어느 당사자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다음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가. 관할권 또는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
 - 나.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자의 석방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
 - 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결정
 - 라.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또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와 관련되며 상소심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절차를 현저히 촉진시킬 수 있다고 예심재판부 또는 1심재판부가 판단하는 결정
2. 제57조 제3항 라호에 따른 예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관련국 또는 수석검사가 상소할 수 있다. 이 상소는 신속히 심리된다.
3. 상소는 상소심재판부가 요청을 받아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정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피해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명령에 의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선의의 재산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은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상 명령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83조

상소심 절차

1. 제81조 및 이 조에 따른 절차의 목적 상 상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2. 상소된 절차가 판결 또는 양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상소된 판결 또는 양형이 사실의 오인,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소심재판부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판결 또는 양형의 파기 또는 변경, 또는

나. 다른 1심재판부에서의 새로운 재판의 명령.

이 목적 상 상소심재판부는 원심재판부가 사실에 관한 쟁점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다시 보고하도록 원심재판부로 환송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쟁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석검사만이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양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3.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형이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소심재판부는 제7부에 따라 형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재판관들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판결은 판결이 근거한 이유를 명시한다.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를 포함하며, 재판관은 법률 문제에 관하여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 상소심재판부는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4조

유죄판결 또는 양형의 재심

1.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또는 피고인의 사망 당시의 생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청구를 제기하라는 명시적인 서면 위임을 받은 자, 또는 피고인을 대신한 수석검사는 다음 근거로 유죄 또는 형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심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1) 재판 당시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그 입수불능에 대하여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신청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증거. 그리고,

(2) 재판 당시 입증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가져 왔을만큼 충분히 중요한 증거.

나. 재판에서 고려되었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결정적 증거가 허위,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다. 유죄판결 또는 공소사실의 확인에 참여하였던 1인 이상의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서 제46조에 따라 그들의 직의 상실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범한 경우

2. 상소심재판부는 신청이 근거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각한다.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소심재판부는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각 당사자들을 심리한 후 판결이 수정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적절한 대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원래의 1심재판부의 재소집

나. 새로운 1심재판부의 구성

다.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유지

제85조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 불법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였던 자는 강제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종국판결로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 재판의 오류가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유죄판결이 파기된 경우, 그러한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았던 자는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단,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외적인 경우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의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실을 재판소가 확인한 경우, 재판소는 무죄의 종국판결 또는 그에 의한 절차의 종결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자에게 절차및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재량으로 명할 수 있다.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86조

일반적 협력의무

당사국은 이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재판소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7조

협력요청 : 일반조항

- 가. 재판소는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요청은 외교경로 또는 각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지정한 기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그 지정에 대한 당사국의 추후의 변경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적절한 경우 가호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요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도 전달될 수 있다.
- 협력요청 및 이를 증빙하는 문서는 피요청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행한 선택에 따라 피요청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거나, 공식언어의 번역본이 첨부되거나 또는 재판소의 실무언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선택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피요청국은 공개가 협력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이외에는 협력요청과 이를 증빙하는 문서를 비밀로 한다.
- 이 부에 따라 제출된 협력요청과 관련, 재판소는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자, 잠재적 증인과 그 가족의 안전 또는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 부에 따라 입수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잠재적 증인과 그 가족의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처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가.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그 국가와의 특별약정, 협정 또는 기타 적절한 근거에 기하여 이 부에 따른 조력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재판소와 특별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한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그러한 약정 또는 협정에 따른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이를 당사국총회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6. 재판소는 정부간 기구에 정보나 문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권한과 임무에 따라 합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협력과 지원을 그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7. 당사국이 이 규정의 조항에 반하여 재판소의 협력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재판소가 이 규정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사안을 당사국총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8조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당사국은 이 부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이용가능한 절차가 국내법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재판소에 대한 사람의 인도

1. 재판소는 어떤 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요청서를 제91조에 기재된 증빙자료와 함께 그 영역 안에서 그자가 발견될 수 있는 국가에 송부할 수 있으며, 그자의 체포 및 인도에 관하여 그 국가의 협력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요청을 이행한다.
2. 인도요청된 자가 제20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적격성에 대한 관련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와 즉시 협의한다. 그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요청을 이행한다. 재판적격성에 관한 결정이 계류중인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소가 재판적격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도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3. 가. 자국을 통한 통과가 인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다른 국가가 재판소로 인도중인 자가 자국의 영역을 통하여 이송되는 것을 자국의 국내절차법에 따라 허가한다.
- 나. 재판소의 통과요청서는 제87조에 따라 전달된다. 통과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이송될 자에 대한 설명,
 - (2) 사건의 사실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서술, 그리고
 - (3) 체포 및 인도영장
- 다. 이송되는 자는 통과기간동안 구금된다.
- 라. 항공편으로 이송되고 통과국의 영역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마. 통과국의 영역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과국은 나호에 규정된 통과요청서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통과국은 통과요청서가 접수되고 통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송중인 자를 구금한다. 다만 이 호의 목적을 위한 구금은 96시간 내에 요청서가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4. 인도요청된 자가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로 피요청국에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요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후 재판소와 협의한다.

제90조

요청의 경합

1. 제89조에 따라 재판소로부터 인도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이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자의 범죄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접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와 요청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2. 요청국이 당사국인 경우, 피요청국은 다음의 경우 재판소의 요청에 우선권을 준다.
 - 가. 재판소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인도가 요청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적격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요청국이 범죄인인도 요청과 관련하여 수행한 수사 또는 기소를 고려한 경우, 또는
 - 나. 재판소가 제1항에 따른 피요청국의 통지에 따라 가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2항가호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국은 제2항나호에 따른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재량에 따라 요청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의 처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재판소가 그 사건에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까지 범죄인인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소의 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요청국이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재판소가 그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재판소의 인도 요청에 우선권을 준다.
5. 제4항에 따른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국은 재량으로 요청국으로부터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6. 요청국이 이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그 자를 재판소에 인도할 것인지 또는 요청국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요청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 가. 각 요청의 일자
 - 나. 관련되는 경우, 범죄가 요청국의 영역안에서 범하여졌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 인도요청된 자의 국적을 포함한 요청국의 이해관계
 - 다. 재판소와 요청국 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7. 재판소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재판소가 인도를 구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 동일한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 가.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의 요청에 우선권을 준다.
 - 나.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범죄인인도를 하여야 할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에 인도할 것인지 또는 요청국에 범죄인인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피요청국은 제6항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

려하되, 관련 행위의 상대적 성격과 중대성을 특별히 고려한다.

8. 이 조에 따른 통지로 재판소가 사건이 재판적격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후 요청국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거절된 경우, 피요청국은 그 결정을 재판소에 통지한다.

제91조

체포 및 인도요청의 내용

1. 체포 및 인도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요청은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87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예심재판부가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자의 체포 및 인도요청의 경우, 그 요청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 가. 인도요청된 자의 신원 확인에 충분하게 기술된 정보 및 인도요청된 자의 개연적 소재지에 관한 정보,
 - 나. 체포영장의 사본, 그리고
 - 다. 피요청국에서의 인도절차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문서, 진술 또는 정보. 다만 그 요건은 피요청국과 다른 국가간의 조약 또는 약정에 따른 범죄인인도 요청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경우 재판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담이 더 적어야 한다.
3.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요청의 경우, 요청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 가. 인도요청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 나. 유죄판결문 사본,
 - 다. 인도요청된 자가 유죄판결문에서 언급된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 라. 인도요청된 자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과된 선고형량문의 사본과 징역형인 경우에는 이 미 복역한 기간과 잔여형기에 대한 서술.
4. 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일반적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제2항다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국 국내법상의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 중에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상의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조언한다.

제92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재판소는 인도요청서 및 제91조에 명시된 요청증빙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피요청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요청은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긴급인도구속이 요청된 자의 신원확인에 충분하게 기술된 정보 및 그자의 개연적 소재지에 관한 정보

- 나. 가능한 경우 범죄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긴급인도구속이 요청된 자의 요청이 요청된 범죄와 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서술
- 다. 긴급인도구속이 요청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유죄판결문의 존재에 관한 서술
- 라. 긴급인도구속이 요청된 자에 대한 인도요청이 뒤따를 것이라는 서술
- 3. 피요청국이 절차및증거규칙에 명시된 시한 내에 인도요청서 및 제91조에 명시된 요청증빙서류를 접수받지 못하는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피요청국의 국내법상 허용되는 경우, 그 자는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국은 가능한 신속히 그 자를 재판소에 인도하기 위하여 절차를 취한다.
- 4. 긴급인도구속이 요청된 자가 제3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요청서와 요청증빙서류가 뒤늦게 전달되더라도 그 자에 대한 추후의 체포와 인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93조

다른 형태의 협력

1.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다음 지원을 제공하라는 재판소의 요청을 이행한다.
 - 가. 사람의 신원과 소재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나. 선서된 증언을 포함한 증거의 수집과 재판소에 필요한 감정인의 의견 및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의 제출
 - 다. 수사 또는 기소중인 자에 대한 심문
 - 라. 재판서류를 포함한 서류의 송달
 - 마.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자발적인 재판소 출석에 대한 편의 제공
 - 바. 제7항에 규정된 자의 일시적 이송
 - 사. 매장장소의 발굴과 조사를 포함하여 장소나 현장의 조사
 - 아. 수색 및 압수의 집행
 - 자. 공적 기록 및 공문서를 포함한 기록과 서류의 제공
 - 차.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및 증거의 보전
 - 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궁극적 몰수를 위한 수익 · 재산 · 자산 및 범행도구의 확인, 추적 및 동결 또는 압수
 - 타. 재판소 관할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요청국의 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지원
2. 재판소는 재판소에 출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에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재판소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 또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할 권한을 가진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기술된 특별한 지원조치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근본적 법원칙상 금지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속히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시 그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또는 조건부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협의 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한 만큼 그 요청을 수정한다.

4. 당사국은 요청이 당사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의 제출 또는 증거의 공개와 관련되는 경우 예만 제72조에 따라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5. 제1항 타호에 따른 지원요청을 거절하기 전, 피요청국은 지원이 특정한 조건부로 제공될 수 있는지 또는 지원이 추후에 또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단, 재판소 또는 수석검사가 조건부 지원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소 또는 수석검사는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지원요청이 거절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신속히 재판소 또는 수석검사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7. 가. 재판소는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또는 증언이나 기타 지원을 얻기 위하여 구금중인 자의 일시적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송될 수 있다.
 - (1) 그 자가 내용을 알고 자유로이 이송에 대하여 동의하고,
 - (2) 피요청국과 재판소가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피요청국이 이송에 동의한 경우.
- 나. 이송되는 자는 이송 중 구금된다. 이송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재판소는 그 자를 지체없이 피요청국으로 송환한다.
8. 가. 재판소는 요청에 기재된 수사 및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및 정보의 비밀을 보장한다.
 - 나. 피요청국은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정보를 비공개를 조건으로 수석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검사는 오직 새로운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피요청국은 스스로 또는 수석검사의 요청에 따라 추후 그러한 문서나 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은 제5부 및 제6부의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9. 가. (1) 당사국이 인도요청이나 범죄인인도 요청이 아닌 다른 경합되는 요청을 재판소와 자신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 당사국은 재판소 및 다른 국가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요청을 연기시키거나 또는 그 요청에 조건을 첨부함으로써 두 요청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한다.
 - (2)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경합되는 요청은 제90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해결된다.
- 나. 그러나 재판소의 요청이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재산 또는 사람과 관계된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소에 이를 통지하며 재판소는 그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요청을 행한다.
10. 가. 재판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요청국의 국내법상 종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협력하거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나. (1) 가호에 따라 수행하는 지원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재판소가 수행하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얻은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의 송부, 그리고
 - (나) 재판소의 명령으로 구금된 자에 대한 심문
 - (2) 나호(1)(가)에 따른 지원의 경우,
 - (가)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국가의 지원으로 획득된 경우, 송부는 그 국가의 동의

를 필요로 한다.

(나) 진술,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증인 또는 감정인에 의하여 제공된 경우, 송부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재판소는 규정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이 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이 항에 열거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4조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1. 요청의 즉각적인 이행이 요청과 관련된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수사나 기소를 방해할 경우, 피요청국은 재판소와 합의한 기간동안 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는 피요청국이 관련 수사나 기소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어서는 아니된다. 연기 결정을 내리기 전, 피요청국은 지원이 일정한 조건부로 즉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기결정이 내려진 경우, 수석검사는 제93조 제1항 차호에 따라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5조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재판소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의중인 경우, 재판소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수석검사가 그러한 증거의 수집을 계속할 수 있다고 특별히 명하지 않는 한, 재판소의 결정이 계류중인 동안 이 부에 따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96조

제93조상에 따른 다른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1. 제93조에서 규정된 다른 형태의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요청은 문자기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매체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87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요청의 법적 기초 및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의 목적과 요청되는 지원에 대한 간결한 서술
 - 나. 요청되는 지원이 제공되기 위하여 발견되거나 확인되어야 할 사람이나 장소의 소재 또는 신원에 대한 가능한 상세한 정보
 - 다. 요청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적인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서술
 - 라. 추후의 절차 또는 요건의 이유와 상세
 - 마.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 바. 요청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기타 정보
2. 요청은 해당하는 대로 다음을 포함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 가. 요청의 법적 기초 및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의 목적과 요청되는 지원에 대한 간결한 서술
 - 나. 요청되는 지원이 제공되기 위하여 발견되거나 확인되어야 할 사람이나 장소의 소재 또는 신원에 대한 가능한 상세한 정보
 - 다. 요청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적인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서술
 - 라. 추후의 절차 또는 요건의 이유와 상세
 - 마.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 바. 요청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기타 정보
3. 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일반적 또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제2항 마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자국 국내법상의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와 협의한다. 협의동안,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상 특별한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조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적용가능한 경우 재판소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97조

협의

당사국이 이 부에 따라 받은 요청에 관하여 요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없이 재판소와 협의한다. 그러한 문제점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요청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한 정보
- 나. 인도요청의 경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요청된 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된 수사 결과 피요청국 내에 있는 자는 영장에서 거명된 자가 명백히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실
- 다. 현재 형태의 요청 이행은 피요청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

제98조

면제의 포기 및 인도 동의에 관한 협력

1. 재판소가 먼저 제3국으로부터 면제의 포기를 위한 협조를 얻을 수 없는 한, 재판소는 피요청국이 제3국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도요청 또는 지원요청을 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재판소가 먼저 파견국⁴⁾으로부터 인도동의를 위한 협조를 얻을 수 없는 한, 재판소는 피요청국이 파견국의 사람을 재판소에 인도하기 위하여 파견국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도요청을 진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99조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1. 지원요청은 피요청국 법률상의 관련절차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국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요청서에 약술된 절차에 따르거나 또는 요청서에 명시된 자가 이행과정에 출석하고 협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요청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2. 긴급한 요청의 경우, 답변으로 제공되는 문서 또는 증거는 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전달한다.
3. 피요청국의 회신은 그 국가의 언어와 양식으로 작성·송부한다.
4. 이 부의 다른 조항을 저해함이 없이, 요청의 이행에 필수적이라면 피요청당사국 당국의 입회없이 수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람과의 자발적인 면담 또는 그 자로부터의 증거 수집 및 공개된 장소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변형없는 조사 등 강제조치 없이 이행될 수 있는 요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석검사는 그러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국가의 영역에서 직접 집

4) <편집자 주> 원문에서는 'sending state'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요청국과 국제협정을 맺은 국가로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을 의미하고 있다.

행할 수 있다.

- 가. 피요청당사국이 그 영역 안에서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주장되는 국가이고 또한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수석검사는 피요청당사국과 가능한 모든 협의를 거쳐 요청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나. 기타의 경우, 수석검사는 피요청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피요청당사국이 제기한 모든 합리적 조건이나 우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을 집행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이 이 호에 따른 요청의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없이 재판소와 협의한다.
5.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되거나 조사받는 자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원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이 조에 따른 지원 요청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제100조

비용

1. 피요청국의 영역에서 요청을 집행하기 위한 일상적 비용은 재판소가 부담하는 다음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이 부담한다.
 - 가. 증인 및 감정인의 여행 및 안전, 또는 구금증인자의 제93조에 따른 이송과 관련된 비용
 - 나. 번역비, 통역비 및 복사비
 - 다. 재판관, 수석검사, 차석검사,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재판소의 다른 기관 직원의 여비와 수당
 - 라. 재판소가 요청한 감정인의 견해나 보고서의 비용
 - 마. 신병보유국이 재판소로 인도하는 자의 이송 관련 비용
 - 바. 협의에 따라, 요청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비용
2. 제1항의 규정은 적절한 대로 당사국의 재판소에 대한 요청에 적용된다. 그 경우 재판소는 일상적인 이행비용을 부담한다.

제101조

특정성의 규칙

1.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인도된 자는 인도된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행위 또는 행위의 과정이 아닌, 인도 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가 취해지거나 처벌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재판소에 인도를 행한 국가에 대해 제1항의 요건을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제91조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위 요건에 관하여 재판소에 포기할 권한을 가지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2조

용어의 사용

이 규정의 목적 상,